

협회소식



- 4월 16일, 우리 협회 우광국 부회장과 황상모 고문은 일본의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를 방문, 한국과 일본간 건설산업의 안전과 재해예방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한-일 건설안전기술연구회를 설립하고 제1회 연구회를 개최했다.
- 4월 20일,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진주지부가 새롭게 개설되었다. 문옥상 지부장을 비롯한 새로운 진주지부 가족들을 환영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4월 24일, 우리 협회 권오석 명예회장이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6회 대한토목학회 정기총회에서 29대 유복모 회장의 뒤를 이어 30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.
- 5월 15일, 우리 협회 건안산악회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대둔산을 등산했다. 또한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백운산에 다녀왔다.
- 우리 협회가 실시하는 <제9회 건설안전세미나>가 지난 6월 19일 KOEX대회의실에서 'IMF 환경하의 건설안전의 활성화 방안'이라는 주제로 열렸다. 주제발표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임영섭 사무관, 군산대 안홍섭 교수, 서울산업대 이영섭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다.



** 신입회원 - 환영합니다 **

<건설안전기술사>

최웅진 회원 (사)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-4 강산건설(주) 사장 ☎02-561-7305
(집)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1-24 ☎02-422-9248

황주호 회원 (사)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LG건설(주) 해외개발사업부
강춘리조트팀 과장 ☎02-728-2261

(집)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아파트 918동 1304호 ☎02-3391-0572

정흥기 회원 (사)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-2 현대건설(주) 과장
☎02-746-2630, 0455-674-7430~2(현장)

(집)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아파트 303-1105호 ☎02-456-8517

이순일 회원 (사)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6-5 동서증권 6층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(주)
상무이사 ☎02-540-4485

(집)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7-2B 청구타운 111동 503호

☎052-244-1760, 011-870-7016

조병돈 회원 (사)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7-2 이천시청 건설도시국장 ☎0336-30-0033

(집) 경기도 이천시 창천동 대호2차아파트 1205호 ☎0336-637-7096

〈건설안전기사〉

신승문 회원 (사) 서울시 중구 초동 21-9 동부건설(주) 차장
 ☎02-262-2263
 (집)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포도마을 영남아파트 825-501
 ☎032-325-0039

**** 회원 경사·축하합니다 ****

고갑수 회원 감사원 3급으로 승진

**** 직장 및 자택주소 변경 ****

신영승 회원 (사)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9-9 한국관세사회관 4층 한아엔지니어링전문위원
 ☎02-517-9052
 손기상 회원 (사)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서울산업대안전공학과 교수 ☎02-970-6388
 박결호 회원 (집)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 9동 902호
 (사) ☎02-504-9251, 502-4288
 김중환 회원 (집)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영진2차아파트 나동 2001호
 오세진 회원 (사)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68-56 신원지하개발(주) 사장 ☎02-888-4062~3
 김해양 회원 (집)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효성아파트 207동 1302호
 최태순 회원 (사) 충남 홍성군 홍성읍 모관리 311-1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사업단
 이종득 회원 (사) ☎0343-60-0215



**** 인사발령 ****

〈위촉 - 축하합니다〉

김선복 위원 → 서울지회 강남지부 지부장
 정광택 위원 → 서울지회 강북지부 지부장
 김창용 위원 → 서울지회 강원지부 지부장

〈입사 - 환영합니다〉

조충국 강원지부 국장
 문옥상 진주지부 지부장
 권순복 강원지부 사원
 전향숙 대구지회 사원
 남양숙 진주지부 사원
 정미정 총무부 사원



〈전보 - 축하합니다〉

-
- 정영주 기술지도부 → 총무부
 - 김영배 기술지도부 국장 → 서울지회 강북지부, 강남지부
 - 최호수 기술지도부 과장 → 서울지회 강북지부
 - 이장균 기술지도부 대리 → 서울지회 강북지부
 - 박제영 기술지도부 대리 → 서울지회 강북지부
 - 이도우 기술지도부 주임 → 서울지회 강북지부
 - 한기흥 기술지도부 과장 → 서울지회 강남지부
 - 유기성 기술지도부 대리 → 서울지회 강남지부
 - 조수형 기술지도부 대리 → 서울지회 강남지부
 - 황성기 기술지도부 주임 → 서울지회 강남지부
 - 원지영 기술지도부 과장 → 서울지회 안전진단팀
 - 김관연 기술지도부 주임 → 서울지회 안전진단팀
 - 신택균 기술지도부 주임 → 서울지회 안전진단팀
 - 류근대 기술지도부 주임 → 서울지회 안전진단팀

〈대기발령〉

-
- 김상성 기술지도부 주임 → 서울분회 총무부
 - 박상호 기술지도부 기사 → 서울분회 총무부
 - 유준환 기술지도부 주임 → 서울분회 총무부

** 퇴사 - 수고하셨습니다 **

-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이동환 대구지회 기술지도 국장 | 권상미 대구지회 사원 |
| 박상욱 토목부 대리 | 조기수 교육부 사원 |
| 조정제 인천지부 주임 | 권외수 부산지회 주임 |
| 김희진 총무부 사원 | 송인경 총무부 사원 |
| 안용우 부산지회 주임 | 박영식 대전지회 대리 |
| 장영관 부산지회 주임 | |

** 직원경사 - 축하합니다 **

-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김상성 기술지도부 주임 5. 24 결혼 | 정병희 건축부 대리 6. 30 장녀들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
기술지도 계약절차 안내

● 기술지도 업무 계약(노동부 고시 제 96-36 호 제13조 관련)

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(3억 이상~100억 미만인 건설업)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,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또한,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● 계약 절차 안내

1. 기술지도 견적시 필요 서류를 구비하시어 FAX 또는 기타... 로 의뢰

* 필요 서류 :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, 공사원가내역서 총괄표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담당자 성함·전화/Fax 번호

2. 보내드린 견적서를 참고하신 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
3. 수수료는 아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.

* 농협 : 052-17-001204 * 국민 : 809-25-0009-676
* 제일 : 223-20-002885 * 보람 : 013-22-00769-3
예금주 :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

4. 본 협회에서는 상호간의 빠른 절차를 위해 계약서 계약서와 계산서를 함께 빠른등기(속달)로 귀사에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. (직접 방문시 전화 요망)
5. 기술지도 계약 변경사유 발생시
- 현장의 설계 변경시(공사금액 증감 또는 공사기간중단/연장)에는 기술지도 추가 (변경)계약을 하셔야 합니다.
6. 준공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준공계 사본을 준비하시어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- 본 협회에 계약업무처 대사를 하실 경우에는 대표자 직인, 현장약도, 입금표를 지참하여 주시고 방문 전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◆ 문의처 : 기술지도부 TEL. (02) 518-1501~4

고용보험법(제23조)상

교육훈련비 지원안내

1. 양성과정 안전관리자에게 고용보험법상 교육훈련비 지원

우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노동부 지정 고용보험법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우리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고용보험법상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

2. 건설업의 적용대상사업(직업능력개발사업)

- 1) 건설회사 본사
① '98. 1. 1 ~ '98. 6. 30 :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
② '98. 7. 1 부터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
- 2)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: 본사와 관계없이 각 건설현장 단위별로 총 공사금액 34억원 이상인 현장

3. 교육훈련비 지원비율

- 1) 대기업(상시근로자 300인 이상) : 위탁교육비의 70%
 - 2) 중소기업(상시근로자 300인 미만) : 위탁교육비의 90%
- * 단) 지원금 총액은 근로자 1인당 150만원(대기업 100만원) 초과 못함

4. 교육훈련비 지원신청

관할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와 고용보험과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받음

- ① 고용보험 지원신청서
- ② 교육훈련비 지급영수증 사본1부
- ③ 교육훈련 수료자 명단
- ④ 입금대장 사본1부 (유급휴가 훈련에 한함)

◆ 문의처 : 교육부 TEL. (02)514-3100~4